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5월 4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5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3.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 장기근속 직원의 특별휴가 일수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현행 조례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 연가계획 및 허가 정비(안 제14조)

❍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확대(안 제15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정비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 장기근속 직원의 특별휴가 일수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7조(서류보관 등)는 공무원이 퇴근 시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설치된 서류함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문서 등의 보안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생활의 만족도 및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되 특정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내용을 정비함.
-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 제24조제14항을 삭제함. 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제도 등에 대해서는 삭제하도록 규정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한 것임.
- 안 제15조(특별휴가)제4항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3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재직기간 중 20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의 조항을 30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변경함.

❍ 검토 결과

- 현 조례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경우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고 추후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해당 규정을 모두 개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해왔던 사항을 삭제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 현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145 호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여 불필요한 개정을 최소화하고 장기근속 직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신설·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신설·확대(안 제15조)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게 장기재직 특별휴가 5일 부여 신설

2) 3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30일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3. 3. 30.~4. 19./20일간):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서)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9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

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 군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자기계발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구청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공직자 행동규범(제5조 관련)

대 민 관 계	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품위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 절약한다. ○ 남에게 겸손하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 관련)

1. 민간 경력 유사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비고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